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4일, 한민수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2. 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 6.)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 6.)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한민수 의원)

대량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통해 전송된 불법스팸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 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 등록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실효적 규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문자재판매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자재판매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각각 소관업무에 따라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통신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 문자전송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량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사업자의 난립으로 스팸과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을 침해하고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요건 전체에 대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이후에는 사후관리를 통해 등록요건의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이러한 등록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성은 정부의 「불법스팸 종합대책 발표」(관계부처 합동, 2024.11.28.)에서도 대량문자유통시장의 정상화 차원에서 제시된 바 있는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볼 때 시의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자격 인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과기정통부 또는 방통위로 하여금 대량문자전송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